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57

발의연월일: 2020. 9. 18.

발 의 자:김영배·김민철·신정훈

박완주 · 양기대 · 김철민

송재호・기동민・서영교

고용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현수막 게시, 명함 배부, 홍보물 발송 등 일정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되, 선박·정기여객자동차·열차·전동차·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·역·공항의 개찰구 안, 병원·종교시설·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.

이는 후보자와 달리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제한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.

이에 선박·정기여객자동차·열차·전동차·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·역· 공항의 개찰구 안, 병원·종교시설·극장의 안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단서를 삭제함으로써,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제한을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(안 제60조의3제1항제2호 단서 삭제). 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0조의3제1항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0조의3(예비후보자 등의 선거	제60조의3(예비후보자 등의 선거
운동)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	순동) ①
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	
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자신의 성명·사진·전화번호·	2
학력(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	
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	
력을 말한다. 이하 제4호에서	
같다)·경력, 그 밖에 홍보에	
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	
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	
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	
지를 호소하는 행위. <u>다만, 선</u>	
<u>박·정기여객자동차·열차·전동</u>	<u>제></u>
차·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·	
역·공항의 개찰구 안, 병원·종	
교시설·극장의 안에서 주거나	
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	
하지 아니하다.	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